	규정	문서번호	TWP-A503
		제정일자	1996. 06. 01.
	학생 장학 규정	개정일자	2018. 02. 19.
		개정번호	6


## 목 차

- 제1조(목적)
- 제2조(적용범위)
- 제3조(장학금의 종류)
- 제4조(위원회의 구성)
- 제5조(장학생의 선발)
- 제6조(위원회 기능)
- 제7조(장학금 대상과 지급)
- 제8조(지급 및 기간)
- 제9조(장학금 신청)
- 제10조(장학증서)
- 제11조(이중지급 금지)
- 제12조(자격제한 및 반환)
- 제13조(보칙)
- 부칙

작성부서	학생취업처	제정일자	1996. 06. 01
------	-------	------	--------------

구 분	작 성	검 토			승 인
			기획처장	학생취업처장	
직 책	담 당				
서 명		/			
일 자					



	<b>규정</b>		문서번호	TWP-A503
			제정일자	1996. 06. 01.
	<b>학생 장학 규정</b>		개정일자	2018. 02. 19.
			개정번호	6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2.5.25>

**제2조(적용범위)** 동원대학교(이하 “이 대학교”라 한다)의 장학대상자는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하고, 이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.<개정 2012.5.25>

**제3조(장학금의 종류)** 장학금의 종류는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, 국가장학금으로 구분하며, 그 세부내역은 별표 1과 같다.<개정 2012.5.25>

**제4조(위원회의 구성)**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학칙 제40조의2의 학생복지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심의·의결한다.<개정 2012.5.25>

**제5조(장학생의 선발)** 장학생은 추천을 받은 후보학생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선발하며, 위원장은 총장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<개정 2012.5.25>


**제6조(위원회 기능)**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개정 2012.5.25>

1. 장학제도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예산에 관한 사항<개정 2012.5.25>
2.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<개정 2012.5.25>
3.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<개정 2012.5.25>
4. 그 밖에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②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된 결과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<개정 2012.5.25>

**제7조(장학금 대상과 지급)** ① 이 대학교의 재학생 중 장학생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.<개정 2012.5.25>

1.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
2. 재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
3.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대학교의 도움이 필요한 자<개정 2012.5.25>
4. 모범적인 총학생회 활동 실적이 있는 자. 단, 활동 실적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2012.5.25>
5. 이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 본인 및 그의 직계자녀<개정 2010.4.12., 2012.5.25>
  - 5-1.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<개정 2012.5.25>
6. 국가 또는 이 대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<개정 2012.5.25>
7. 삭제<2012.5.25>

	<b>규정</b>	문서번호	TWP-A503
		제정일자	1996. 06. 01.
	<b>학생 장학 규정</b>	개정일자	2018. 02. 19.
		개정번호	6

8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특수 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른 국가유공자<신설 2012.5.25>

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전체수석은 입학등록금 전액을 지급하고, 각 전공별 수석입학자는 수업료를 지급하며, 제1항제5의1호의 경우 총장이 지급기간 및 지급액을 정한다. 다만, 제1호 및 제5의1호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.<개정 2012.5.25>

**제8조(지급 및 기간)** 장학금의 지급시기는 지급학기 등록 마감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외부장학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<개정 2010.4.12>

**제9조(장학금 신청)** 삭제<2010.4.12>


**제10조(장학증서)** 이 대학교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이사장 또는 총장이 수여하는 장학증서와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받는다.<개정2012.5.25>

**제11조(이중지급 금지)** 교외장학금을 포함한 각종 장학금의 이중수혜는 금지하며, 중복이 될 경우 수혜자에게 유리한 1종목만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2012.5.25>

1. 교내·외 근로 조건부 장학금<개정 2012.5.25>
2. 복지·가족장학금<개정 2012.5.25>
3. 공로장학금<개정 2012.09.12>
4. 그 밖에 총장이 따로 정한 사항<개정 2012.5.25>

**제12조(자격제한 및 반환)**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.

1. 보훈장학생 중에서 국고와 이 대학교의 보조로 등록금이 감면되는 자<개정 2012.5.25>
2. 교직원의 직계자녀<개정 2012.5.25>
  1. 3. 교외장학생 중에서 교외의 장학재단, 사회단체, 기업, 또는 개인 등의 지명 및 이 대학교의 추천에 의하여 선발된 장학생으로 등록금의 3분의 2 이상 감면되는 자<개정 2012.5.25>
4. 징계대상자 중에서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자<개정 2012.5.25>
5. 휴학자 중에서 장학사정일 이전에 휴학한 자. 다만, 군 입대 및 질병에 의한 사유는 제외한다.<개정 2010.4.12, 2012.5.25>
6. 4학기 초과 수강자
7.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5학점 미만인 자

	<b>규정</b>		문서번호	TWP-A503
			제정일자	1996. 06. 01.
	<b>학생 장학 규정</b>		개정일자	2018. 02. 19.
			개정번호	6

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대상에서 제외하며, 이미 지급한 장학금도 정지 또는 취소하고,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반환하도록 조치한다.<개정 2012.5.25>

1.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
2. 장학금을 제외한 이 대학교 납입금의 차액을 기일 내 납입하지 않는 경우<개정 2012.05.25>
3. 장학사정일 이전에 미등록 휴학을 한 경우. 다만, 군 입대 및 질병에 의한 사유는 제외한다.
4. 삭제<2012.05.25>
5. 그 밖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해당 학기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<개정 2012.05.25>

**제13조(보칙)**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<개정 2012.05.25>

#### 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## 장학금의 종류

구 분	장학금 종류	장학대상자 기준
교내장학금	성적우수 장학금	신입생, 재학생 성적우수자
	공로 장학금	총학생회, 대의원회, 신문방송국, 응원단 등 학교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학생
	희망 장학금	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
	가족 장학금	가족 2명이상 이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
	해외연수 장학금	해외어학연수, 해외문화탐방 선발자
	근로 장학금	교내 전공 및 행정부서 근로학생
	외국인면학 장학금	외국인 입학생
	전공심화과정 장학금	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한 학생
	산업체위탁 장학금	산업체 위탁생으로 입학한 학생
	교직원 장학금	이 대학교 재직 중인 교직원 본인
	교직원자녀 장학금	이 대학교 재직 중인 교직원 직계자녀 중 이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
국가유공자 장학금	국가보훈대상자 및 자녀로서 교육보호대상자	
교외장학금	산학협동 장학금	전공교수 추천 학생
	장학재단 장학금	각종 장학재단 선발 학생
	지방자치단체 장학금	지방자치단체 선발 학생
국가장학금	국가장학금 I·II 유형	소득분위 0~7분위자중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학생
	전문대학 우수학생 국가장학금	성적우수자 중 선발 학생
	국가근로 장학금	저소득층 학생 중 국가근로 선발 학생
	장애학생도우미 지원금	장애학생 도우미 학생
	북한이탈주민 장학금	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로서 교육보호대상자